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11월 1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월 9일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1. 9.(월)	담당부서	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담당과장	박용민 과장(043-870-5450)	담 당 자	유경희 연구관(043-870-5418)

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 안전관리 강화!

- 산업부, 유해물질 안전요건 포함한 「방한대 예비안전기준」 공고 -
- 일반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구분 명확화 -

□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**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**한다.

* 부직포 : 천연·화학·합성 섬유 등을 서로 접합하여 결합한 시트 모양의 천으로, 일회용 마스크 등에 폭넓게 활용 중

○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**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 개선한 '방한대 예비안전기준'을 제정하여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**한다고 밝혔다.

* 방한대(防寒帶) : 미세먼지·유해물질·비말 차단 등 기능 없이 추위를 막는 마스크(의류제품)

□ 최근 나노필터 등 일부 부직포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인 **디메틸포름아미드(DMF) 또는 디메틸아세트아미드(DMAc)가 사용**되고 있어,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.

* 나노필터 : 100 nm(1천만분의 1 m, 머리카락 대비 1백분의 1굵기) 내외의 섬유가 접합된 부직포
* DMF, DMAc : 부직포 마스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서, 생식독성, 간 손상, 발암성 등의 유해성을 나타냄

○ 또한,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, **소비자가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**(KF 마스크)**로 오인**하는 사례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도 필요한 상황이다.

□ 이에 따라, 국가기술표준원은 실태조사*('20.6월~8월), 전문가(식품의약품안전처, 시험인증기관** 등) 논의 등을 거쳐 **DMF와 DMAc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를 마련**하여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.

* 나노필터 마스크 판매 상위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DMF 또는 DMAc 검출

** 마스크 시험기관 : 의류시험연구원, FITI, KOTITI,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

○ 이번 예비안전기준 시행 이후,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**유해물질**(DMF, DMAc) **기준치**(5 mg/kg) **이하의 제품만 출시**할 수 있으며, 앞으로는 제조공정에서 DMF 또는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아울러, 마스크 **제품명에 '가정용 섬유제품**(방한대)**' 표시를 의무화**하여 **소비자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**(KF 마스크)**를 명확하게 구별**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신설하였다.

○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**'가정용 섬유제품(방한대)' 대신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된 '보건용 마스크**(KF 마스크)**'를 사용할 것을 권장**한다.

○ 또한, 소비자가 마스크 제품 선택 시 참고하고,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**부직포의 제조방법*과 취급상 주의사항**도 표시**하도록 하였다.

* 스펀본드, 멜트 블로운, 전기방사 등 제조방법 명시

** 부직포가 사용된 경우 "세탁할 경우 사용할 수 없음"으로 표시

□ 11월 10일 공고하는 **‘방한대 예비안전기준’**은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**12월 11일부터 시행**된다.

○ 시행일(12.11.) 이후 출시 또는 통관되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부터 적용되며, 이날 이후로는 **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·불량 제품을 차단**할 계획이다.

○ 예비안전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* 국표원 홈페이지(www.kats.go.kr) → 안전기준열람 → 생활용품안전기준 → 방한대 예비안전기준

【붙 임】「방한대 예비안전기준」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유경희 연구관(☎ 043-870-54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「방한대 예비안전기준」 개요**

□ 적용 대상



○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한대 중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

* 미세먼지/유해물질/비말 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

□ 유해물질 안전요건

유해물질명	기준치	비고
포름알데히드	75 mg/kg 이하	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
아릴아민	30 mg/kg 이하	
pH	4.0 ~ 7.0	
디메틸포름아미드(DMF)	5 mg/kg 이하	부직포 마스크에 대한 추가 안전요건
디메틸아세트아미드(DMAc)	5 mg/kg 이하	

* 단, 제조공정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스펀 본드(spun-bonded), 멜트 블로운(melt-blown) 및 스펀 본드와 멜트 블로운이 결합된 복합부직포에 대해서는 DMF 및 DMAc 기준치를 적용하지 않음

□ 표시사항

○ **품명** 가정용 섬유제품(방한대)으로 표기함

○ **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** 안감, 중간층, 겉감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. 단, 부직포의 경우 제조방법(예시 : 스펀본드, 멜트 블로운, 전기방사 등)을 표기하여야 함

○ **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**

○ **제조국명**

○ **제조년월**

○ **치수**

○ **취급상 주의사항** 부직포가 사용된 경우 "세탁할 경우 사용할 수 없음"으로 표시하여야 함

○ **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**

□ 일반 부직포 마스크(방한대)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의무사항

○ 해당 제품이 '방한대 예비안전기준' 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함[1]을 확인한 후, KC마크 없이 표시사항[2]을 표시하여야 함

[1] ①원자재(염료, 방수가공제 등)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안전성에 확인된 원자재사용 ③민간자율인증 ④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

[2] ①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, ②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, ③제조국명, ④제조연월, 최초 판매시즌,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⑤치수, ⑥취급상 주의사항, ⑧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